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3.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이정에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기록의 표준화와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주민참여감독자” 및 “감독공무원”에 대한 정의

나. 공사의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 시공 문제 통지
- 감독공무원의 조치
-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작성 및 제출

다. 주민참여감독자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라.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서식(별지 1호·별지 2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회계과

라. 입법예고 : 2026. 3. 5.(5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민참여감독제는 생활밀착형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참여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서, 본 안건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와 감독공무원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하여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로 기록·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절차와 서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사 현장 관리의 객관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검토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9. 13.>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주민참여감독자, 감독공무원의 용어 정의,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서식 추가 신설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발생하는 재정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행정국 회계과장 홍은희